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3호 2016. 9. 1.(목)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공 고】**

제2016-1383호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2016-1389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9  
 제2016-1394호 「공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9

**【고 시】**

제2016-125호 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고시 ..... 81  
 제2016-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큰샘A-1 외 9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96  
 제2016-127호 도시공원(사적공원)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3  
 제2016-1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7)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6  
 제2016-12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08  
 제2016-130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10  
 제2016-13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12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및 제빙의 범위를 지붕에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설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설·제빙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안전관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재난관리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649, FAX : 041) 840-233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상의” 를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으로, “하는 것을” 을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화박관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중 “및 보행자전용도로” 를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2항 중 “별표와” 를 “별표1과” 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sup>2</sup> )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b>0.5 이하 지역</b>	<b>50.0</b>	<b>75.0</b>	<b>25.0</b>	<b>37.5</b>	공주시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강원도 강릉 2.5초과 3.0이하 지역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sup>2</sup>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 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sup>2</sup>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준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u>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7.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u> ----- ----- ----- ----- -----<u>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u> ----- <u>작업을</u> --.</p> <p>7. (현행과 같음)</p> <p>8. "<u>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u></p>

<신 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 설>

는 구조를 말한다.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

1. 2. (현행과 같음)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②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 (생략)

<신 설>

제8조 (생략)

②-----  
----- 별표1과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규칙 제명을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서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지방세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99조문→24조문)
- 보통징수,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안 제5조 ~ 제6조)
- 납세고지서의 작성, 납기마감 처리,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안 제7조 ~ 제11조)
- 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시세 미수납액의 이월(안 제12조 ~ 제14조)
- 시세 환급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급, 충당, 통지 등(안 제15조 ~ 제18조)
-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납세담보의 범위(안 제19조)

-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안 제21조 ~ 제23조)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청(안 제24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1/우편번호: 32552/☎840-8331/ FAX: 840-2318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공주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

접 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주시 세무과장(이하 “세무과장”이라 한다)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세무과장은 시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세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세무과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수납기관(공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수납액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무과장은 제2항의 수납자료를 사후 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

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세무과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세무과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 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세무과장은 시세의 부과 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세무과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세부와 결정내역이 불복청구·결정착오·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세무과장은 독촉기한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매 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시세에 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시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 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① 세무과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시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시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64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심의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직접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6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7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8	수납부	
9	징수부	
10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11	이월 체납액 정리부	
12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13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14	지방세 체납정리표	
15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16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17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18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	
19	배분계산서	
20(갑)	결손처분표	
20(을)	결손처분표	
21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 별지 제2호 서식 ]

### 송달부(직접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납세자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주소 과세물건	연락처	수령인 관계	서명	수령 일자	미교부 사 유
<b>누 계</b>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m)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input type="checkbox"/> 징수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결정결의서</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외 번지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

##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 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



<b>지방세 체납정리표</b>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 명									
상 호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측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Blank area for map)							

210mm×297mm(일반용지 80g/㎡)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b><u>주 거 확 인</u></b>			<b><u>재 산 확 인</u></b>	
1. 납세자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장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b><u>극빈자 확인</u></b>			<b><u>재조사 확인</u></b>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년 월 일 읍·면장 (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지방세환급내역 및 처리내역 정리부

연도 월	지방세환급 내역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역				결재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월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 자인
			계	본세 개														
연도	월	계	본세	가산금	과오납	사유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 자인
연도	월	계	본세	가산금	과오납	사유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 자인
연도	월	계	본세	가산금	과오납	사유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 자인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액	구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필통지역 ④	차인미지급액 ③ - ④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팀장	과장	
당월 계												
연도 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b>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b>							
환급금 내역	년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지방세환급금	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팀장		총당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	번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총당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	--	-------	-----



<b>배 분 계 산 서</b>						
<b>채납자</b>	<b>성 명</b>		<b>납세자번호</b>			
	<b>상 호</b>		<b>사업자등록번호</b>			
	<b>주소 또는 거소</b>					
<b>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b>						
<b>매 각 재 산 의 표 시</b>						
<b>압류에관계되는국세의금액</b>						
<b>채 권 자</b>						
<b>성 명</b>	<b>주소 또는 거소</b>				<b>채 권 금 액</b>	
<b>배분순위 및 금액</b>						
<b>순 위</b>	<b>성 명</b>	<b>납세자번호</b>	<b>사업자등록번호</b>	<b>금 액</b>	<b>교부일</b>	<b>비 고</b>
<b>기 타</b>						
<p>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공 주 시 장</p>						

210mm×297mm(일반용지 80g/㎡)

<b>결 손 처 분 표</b>									
<b>결 재</b>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 장	국 장						
년    월    일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b>세 액</b>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b>조 사 결 과</b>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b>조 사 자</b>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b>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b>									
<b>조 사 사 항</b>					<b>조사 및 확인자</b>				
					조사자 (담당자) : : : 확인자 (과 장) :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b>결    손    처    분    표</b>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시민국 세무과장 서 난 원 (☎ 840-8330)

## 【 관계법령 발췌서 】

###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8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6-1394호

「공주시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과 정체성 있는 국토경관 및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관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중임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례 구성 : 본문 42조, 부칙 3조, 별표 3, 별지 9
- 경관계획의 내용 (안 제6조 ~ 제11조)
- 경관사업의 대상 (안 제12조 ~ 제19조)
- 경관협정 (안 제20조 ~ 제31조 )
- 사회기반 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안 제32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안 제33조)

-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 ~ 제37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안 제38조 ~제3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전화 : 041)840-8554 / FAX: 041)840-2326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경관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주시 전역의 특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에 경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경 관 계 획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위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시·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위반 여부

5.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6.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재산권침해 등)

7.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8.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공주시 경관위원회에 해당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경관법에서 정하는 사항

2. 경관계획구역(공주시 전 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3. 경관형성 방침과 경관설계지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고도보존지구, 관광특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공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해당 구역마다 정하도록 한다.

③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주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10조(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별 경관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1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

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와 공주지역을 주된 보급소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경 관 사 업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저수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4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법 제16조 제2항 및 영제8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착수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시장은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4항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시 마다 별도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관사업 업무 소관 국장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 ⑨ 시장은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특정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3.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4.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지붕개선 사업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변경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재정 지원 절차,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결과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자에게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경 관 협 정

**제2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
5. 당해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 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안
6. 사업 미 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위원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법 제23조에 따라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8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 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장 경 관 심 의

제3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3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가설 건축·축사 및 버섯재배사 등 파이프 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100m<sup>2</sup> 초과하는 건축물
4. 시장이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건축물
3.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및 창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6장 경 관 위 원 회

**제34조(경관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할 수 있고, 기타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3. 경관 디자인 소관 업무 공주시 4급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공모 당선작 :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 :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 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 :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제3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위원의 위촉·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명이상 20인이내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제34조 제4항2호의 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 심의·의결 및 자문에 참여 할 수 없다.

**제3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 ① 주무부서의 경관협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경관 개선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도시경관관련팀(과)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 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을 응하지 않을 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 등에 출석 또는 서면 심의·자문 하는 위원

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① 제32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에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내지 39조와 관련된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③ 이 조례 제정·시행 이후에도 제34조에 의한 경관위원회가 구성·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2장 경관계획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별표 1】

사회기반시설 심의·자문대상

구 분	심의 대상	자문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도로 시설물	• 길이 20m 이상 폭 1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길이 50m 이상 터널, 생태통로		
도로부속 시설물	•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30m이상, H=1.5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20m이상, H=1.5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하천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미만 사업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공공 시설물	•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심의자문 제외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조경공사	• 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 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 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주차장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100면 이상 조성사업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30면 이상 100면 미만 조성사업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30면 미만 조성사업
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
조명	• 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사업	• 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
조형물	• 높이 10미터 이상의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	-	-
기타	•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	-

※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를 받을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건축물 심의·자문대상

유형	심의 대상	자문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b>1. 단독주택(경사지붕 외 주택에 한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li> <li>• 도시지역 외지역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 초과 330㎡ 이하</li> <li>• 도시지역 외지역 :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 초과 2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자문 대상 외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 다가구주택, 공간</li> </ul>			
<b>2. 공동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li> <li>• 연립주택</li> <li>• 다세대주택</li> <li>• 기숙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동주택</li> </ul>	-	-
<b>3. 상업용, 업무용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li> <li>•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종교시설</li> <li>• 판매, 운수시설</li> <li>• 의료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li> <li>• 노유자시설</li> <li>• 수련, 운동시설</li> <li>• 업무, 숙박, 위락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00㎡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00㎡ 초과 1,0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청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3의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3의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 이하</li> </ul>	-
<b>4. 기타건축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및 창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00㎡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0㎡ 이상 5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자문 대상 외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동물및식물관련시설</li> <li>• 자원순환관련시설</li> <li>• 교정및군사시설</li> <li>• 방송통신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li>• 장례식장</li> <li>• 야영장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 연면적 500㎡ 초과</li> <li>• 도시지역 외 지역 : 500㎡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 연면적 200㎡ 초과 500㎡ 이하</li> <li>•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 200㎡ 초과 5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자문 대상 외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li> </ul>

【별표 3】

### 공공건축물

구 분	내 용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도서관, 복지회관, 예술회관, 박물관 등) 다. 시에서 건축하는 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협의 대상 건축물(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공중화장실 아.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소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뒷면)

**안전제출시 구비서류 (요청한 부수)**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3. 경관 형성계획서
    - 위치도 (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 (5×7) 3~4매
    - 디자인 컨셉 (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색채계획도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4.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5. 경관조명 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 도면 (종류, 수량, 용도 등 명기)
  6.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사업 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 ※ 계획서 작성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위 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참고서류 함께 제출**

## 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14-7호(2014.01.15)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정정 및 공주시 고시 제2015-13호(2015.02.02.)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정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와 제19조에 의거 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9월 1일

## 공 주 시 장

### ■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정안2농공단지(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294,921.3㎡

### 3. 농공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
- 공주시에 농공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구유입, 소득증대, 고용창출 및 재정증대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 도모
- 공주시의 급증하는 공장수요에 따른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 준공된 농공단지로 당초 사업자인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가 청산 완료되어 산업단지 관리가 공주시로 이관 되었음

###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기 간 : 2007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 6. 주요 유치업종(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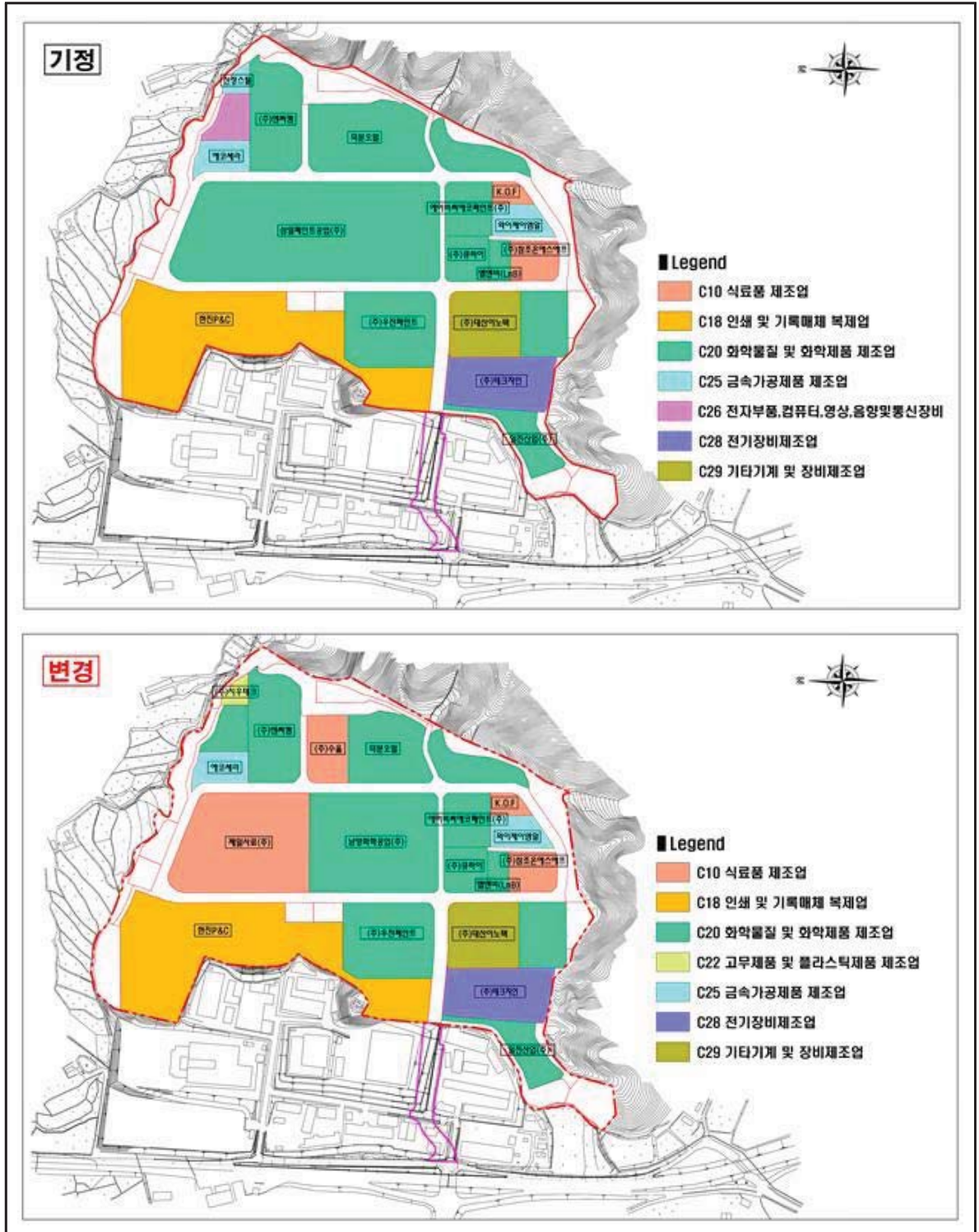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0 식료품 제조업</li> <li>○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li> <li>○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li> <li>○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li> <li>○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li> <li>○ C28 전기장비 제조업</li> <li>○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li> </ul> <p>※ 제5차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1984.12) 업종을 현재 기준인 제9차 한국산업표준분류(2007.12)에 맞게 적용하여 식품:31→C10, 섬유:32→C13, 기계금속:38→C25, 기타:39→C33으로 분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0 식료품 제조업</li> <li>○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li> <li>○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li> <li>○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li> <li>○ C28 전기장비 제조업</li> <li>○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li> <li>○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li> </ul>

## 가. 업종배치계획(변경)

< 업종배치계획표 >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합 계	219,721.8	100.0	
기 정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_(주)한진피앤씨	43,794.8	19.9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주)우진페인트	15,343.6	7.0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삼일페인트공업(주)	57,468.3	26.1	
변 경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남양화학공업(주)	28,873.3	13.1	실시계획 변경반영 공주시 고시 제2014-14호
변 경	(C10)식품제조업_제일사료(주)	28,595.0	13.0	
기 정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_에코세라	3,535.7	1.6	
기 정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55.1	1.3	
변 경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855.1	1.3	실시계획 변경반영 공주시 고시 제2015-13호
기 정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_신정스틸	2,199.0	1.0	금회변경
변 경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_(주)시우테크	2,199.0	1.0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주)엔시켄	12,667.8	5.8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덕분오일	18,155.4	8.3	실시계획 변경반영 공주시 고시 제2014-14호
변 경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덕분오일	11,864.5	5.4	
변 경	(C10)식품제조업_(주)수울	6,290.9	2.9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5,952.5	2.7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에이비씨에코페이트(주)	5,719.0	2.6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주)큐하이	4,476.9	2.0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엘앤비(LnB)	2,003.1	0.9	
기 정	(C10)식품제조업_(주)참조은에스에프	4,346.3	2.0	
기 정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_와이제이엠알	3,908.7	1.8	
기 정	(C10)식품제조업_K.O.F	1,715.7	0.8	
기 정	(C29)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_(주)대산이노텍	10,569.3	4.8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7,025.2	3.2	
기 정	(C28)전기장비제조업_(주)테크자인라이트페널	12,287.1	5.6	
기 정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_일진산업(주)	5,698.3	2.6	

< 업종배치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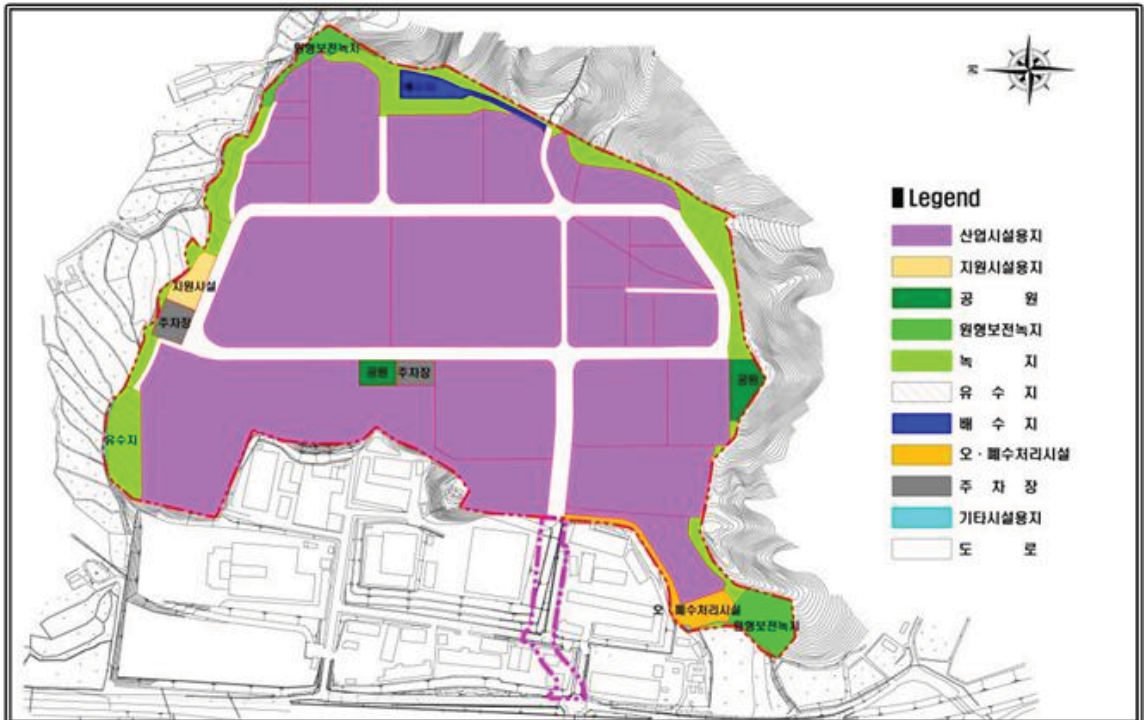
##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합	계	294,921.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219,721.8	74.5		
지	원 시 설 용 지	1,845.2	0.6		
공 지 원 시 설	소	계	8,646.0	2.9	
	주 차 장	2,893.0	1.0		
	공 원 ( 체 육 시 설 )	3,280.2	1.1		
	배 수 지	2,472.8	0.8		
녹 지 용	소	계	23,709.7	8.0	
	완 충 녹 지	19,514.7	6.6		
	유 수 지	4,195.0	1.4		
공 시 설 용	소	계	38,807.3	13.3	
	도	로	29,682.9	10.2	
	오 . 폐 수 처 리 장	3,323.0	1.1		
	원 형 보 전 녹 지	5,801.4	2.0		
기 타 시 설 용 지	소	계	2,191.3	0.7	
	구	거	387.3	0.1	
	도	로	1,804.0	0.6	

< 토지이용계획도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0	2,300	31,161.8	-	-	-	-	-	-	-	-	-
중로	4	1,616	25,981.5	1	198	4,074.2	3	1,418	21,907.3	-	-	-
소로	6	684	5,505.4	1	102	1,086.2	2	243	2,040.0	3	339	2,379.2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198	중로1-A	소로2-1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76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30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중로2-3	산10-1임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0	중로1-1	중로2-3	보행자전용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2-3	산2-4임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9	중로2-3	29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9	중로2-3	516-2장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01	중로2-3	522장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⑤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기정	1-④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 3)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③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일원	1,239.4		
기정	6-⑤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일원	2,040.8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⑧	녹지	완충녹지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5,200.5	-	1-⑤는 유수지와 중복결정
기정	4-②				12,469.9		
기정	6-⑧				1,621.4		
기정	6-⑨				222.9		
기정	1-⑤				4,195.0		
기정	3-⑦	녹지	원형보전 녹 지		2,064.6	-	
기정	6-⑦				3,736.8		

### 4)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일)	비 고
기정	총 계	527.1	
변경		507.8	
기정	공 업 용 수	401.2	
변경		382.6	
기정	생활용수	계	125.9
변경			125.2
기정		산업시설용지	89.0
변경			88.3
변경 없음		지원시설용지	36.9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⑥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	

5) 오·폐수처리 계획(변경)

구 분		계 획 오·폐수량(㎥/일)	비 고
기정	합 계	268.26	
변경		239.99	
기정	생활오수	118.97	
변경		118.34	
기정	산업시설	149.29	
변경		121.65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⑥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 폐수 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	

6)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⑤	유수지	저류지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7)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부분이 종이류, 캔류, 빈병, PET병 등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지침, 1999.1, 환경부」 붙임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 요령(안)에 따라 분리 배출
-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 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

8) 전력공급계획(변경)

구 분		전력수요량 (MWh/년)	비 고
기정	합 계	148,109.0	
변경		143,838.6	

9) 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규 모	회 선 기 준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878(종업원수)	1.0회선/10인	114	여유율 30% 적용
변 경	868(종업원수)	1.0회선/10인	113	

8.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94)에 비치하였으며,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 실시계획(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정안2농공단지(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나.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준공된 농공단지로 당초 사업자인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가 청산 완료되어 산업단지 관리가 공주시로 이관 되었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294,921.3m<sup>2</sup>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13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정안2농공단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294,921.3	100.0	
관 리 지 역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294,921.3	100.0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0	2,300	31,161.8	-	-	-	-	-	-	-	-	-
중로	4	1,616	25,981.5	1	198	4,074.2	3	1,418	21,907.3	-	-	-
소로	6	684	5,505.4	1	102	1,086.2	2	243	2,040.0	3	339	2,379.2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198	중로1-A	소로2-1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76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30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중로2-3	산10-1임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0	중로1-1	중로2-3	보행자전용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2-3	산2-4임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9	중로2-3	29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9	중로2-3	516-2장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01	중로2-3	522장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⑤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기정	1-④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 2) 공간시설

### 가)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③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일원	1,239.4		
기정	6-⑤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일원	2,040.8		

### 나)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⑧	녹지	완충녹지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5,200.5	-	1-⑤는 유수지와 중복결정
기정	4-②				12,469.9		
기정	6-⑧				1,621.4		
기정	6-⑨				222.9		
기정	1-⑤				4,195.0		
기정	3-⑦	녹지	원형보전 녹 지		2,064.6	-	
기정	6-⑦				3,736.8		

## 3) 유통 및 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⑥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	

## 4) 환경기초시설

### 가) 수질오염방지사설

○ 수질오염방지사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6-⑥	수질오염 방지사설	오폐수 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	

5) 방재시설

가) 우수지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⑤	우수지	저류지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	-	정안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294,921.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면 적 (m <sup>2</sup> )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합 계			-	219,721.8	
1	①		정안면 사현리 509번지	43,794.8	
	②		정안면 사현리 512번지	15,343.6	
2	①		정안면 사현리 515번지	28,595.0	
	②		정안면 사현리 515-1번지	28,873.3	
3	①		정안면 사현리 516번지	3,535.7	
	②		정안면 사현리 517번지	12,667.8	
	③		정안면 사현리 520번지	18,115.4	
	⑨		정안면 사현리 516-1번지	2,855.1	
4	⑩		정안면 사현리 516-2번지 일원	2,199.0	
	①		정안면 광정리 324번지 일원	5,952.5	
5	①		정안면 사현리 522-1번지 일원	5,719.0	
	②		정안면 사현리 522번지	4,476.9	
	③		정안면 사현리 522-3번지	2,003.1	
	④		정안면 사현리 522-4번지	4,346.3	
	⑤		정안면 사현리 522-2번지 일원	3,908.7	
	⑥		정안면 광정리 323번지	1,715.7	
6	①		정안면 사현리 523번지	10,569.3	
	②		정안면 사현리 524번지	7,025.2	
	③		정안면 사현리 526번지	12,287.1	
	④		정안면 사현리 527번지	5,698.3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④	정안면 사현리 514번지	1,845.2	

다) 공원(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3,280.2	
1	③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1,239.4	
6	⑤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2,040.8	

라) 원형보전녹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5,801.4	
3	⑦	정안면 사현리 518번지	2,064.6	
6	⑦	정안면 사현리 529번지	3,736.8	

마) 완충녹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3,709.7	
3	⑧	정안면 사현리 530번지 일원	5,200.5	
4	②	정안면 광정리 325번지	12,469.9	
6	⑧	정안면 사현리 536번지	1,621.4	
6	⑨	정안면 사현리 538번지	222.9	
1	⑤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바) 주차장(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2,893.0	
1	④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3	⑤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사) 배수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⑥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아) 유수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	⑤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자) 오·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6	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건 폐 율	• 70% 이하 (시도조례 제53조 규정)
		용 적 률	• 150% 이하 (시도조례 제58조 규정)

7. 행위의 제한

-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게재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게재 생략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큰샘A-1 외 9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반죽동, 봉황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큰샘A-1 외 9개소) 부지 내 「대통지구 외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일

##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반죽동 259-2번지 외 143필지

나.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칭	사업내용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대통지구외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소로3큰샘A-1 외 9개소) 개설공사	도로개설(10개소) B=6.0m, L=925.0m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성 명 : 공주시장(전략사업과)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마. 사용 또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대동지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	-	-	39,784.6	2,028.7	-	-	-	-	-	-
1	반죽동	259-2	도	16.5	1.0	국(국토교통부)	-	-	-	-	-
2	반죽동	261-4	대	60.8	60.8	김동철	261-1	농협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
3	반죽동	261-5	대	34.0	34.0	안용규	반죽동 193	-	-	-	-
4	반죽동	281-12	대	22.6	22.6	윤동현	281-5	-	-	-	-
5	반죽동	281-13	대	29.4	29.4	임문규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1길 5(반죽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공주시지점)	근저당권	-
6	반죽동	283-3	대	9.6	9.6	안인호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2길 1(반죽동)	-	-	-	-
7	반죽동	287-5	대	4.5	4.5	이복래	309	-	-	-	-
8	반죽동	287-6	대	1.0	1.0	구분선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87-4	-	-	-	-
9	반죽동	287-7	대	0.2	0.2	구분선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2길 3-2(반죽동)	-	-	-	-
10	반죽동	288-1	대	38.8	38.8	임복임	공주시 의당면 백산리 113	-	-	-	-
11	반죽동	306-4	대	6.3	6.3	강미진 외 1인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08	-	-	-	-
12	반죽동	307-3	대	34.3	34.3	전경숙	307-1	-	-	-	-
13	반죽동	308-1	대	31.9	31.9	공주시	-	-	-	-	-
14	반죽동	309-3	대	0.7	0.7	이복래	309	-	-	-	-
15	반죽동	309-4	도	1.5	1.5	김순복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305	-	-	-	-
16	반죽동	350	도	20,251.6	202.0	국(국토교통부)	-	-	-	-	-
17	반죽동	355	구	135.5	90.0	국(국토교통부)	-	-	-	-	-
18	봉황동	33-2	대	50.6	50.6	유근식	216	-	-	-	-
19	봉황동	34-2	대	12.4	12.4	공주시	-	-	-	-	-
20	봉황동	108-1	대	195.7	10.0	유창선	108-1	-	-	-	-
21	봉황동	108-32	대	0.1	0.1	신현승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 766	-	-	-	-
22	봉황동	108-33	대	35.9	35.9	유종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산38 흑표아파트 라-106	농협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
23	봉황동	108-34	대	0.2	0.2	이주훈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2길 6-2(반죽동)	-	-	-	-
24	봉황동	108-18	대	30.7	30.7	공주시	-	-	-	-	-
25	봉황동	108-31	대	4.4	4.4	공주시	-	-	-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	봉황동	111-4	대	68.6	68.6	정근희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582 현대아파트 2-1508	-	-	-	
27	봉황동	111-6	대	66.3	66.3	김정순	충청남도 공주시 장대2길 11-1(봉황동)	의당농업 협동조합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리로 5	근저당권	
28	봉황동	112-4	대	24.4	24.4	황연순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찬호길 15-19(산성동)	-	-	-	
29	봉황동	125-2	대	62.0	62.0	손창호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72-7	-	-	-	
30	봉황동	126-7	대	26.0	26.0	최병연	충청남도 공주시 장대3길 3(봉황동)	-	-	-	
31	봉황동	126-8	대	0.1	0.1	최복수	웅진동 39	-	-	-	
32	봉황동	127-4	대	25.1	25.1	송문자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27-1	-	-	-	
33	봉황동	127-5	대	35.5	35.5	이복례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09	-	-	-	
34	봉황동	128-1	대	90.5	90.5	노준순	교동1-14	-	-	-	
35	봉황동	130-1	대	20.4	20.4	황연순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찬호길 15-19(산성동)	-	-	-	
36	봉황동	131-2	대	58.6	58.6	김성관	131	-	-	-	
37	봉황동	131-1	대	4.5	4.5	공주시	-	-	-	-	
38	봉황동	132-2	대	63.4	63.4	정은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고개로 17-26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공주시점)	근저당권	
39	봉황동	133-2	대	45.2	45.2	선기채	133	-	-	-	
40	봉황동	133-1	대	3.3	3.3	공주시	-	-	-	-	
41	봉황동	134-2	대	32.5	32.5	박창규	134	-	-	-	
42	봉황동	134-1	대	13.8	13.8	공주시	-	-	-	-	
43	봉황동	135-1	대	55.2	55.2	유교열	135	-	-	-	
44	봉황동	143-1	대	2.7	2.7	박준용	공주시 봉황동 143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45	봉황동	143-2	대	3.6	3.6	박준용	공주시 봉황동 143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46	봉황동	378-1	도	18,068.6	567.0	국(국토교통부)	-	-	-	-	
47	봉황동	378-48	대	0.1	0.1	유석달	반죽동 279	-	-	-	
48	봉황동	378-49	대	5.0	5.0	황연순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찬호길 15-19(산성동)	-	-	-	
49	봉황동	0-2	가	-	42.0	-	-	-	-	-	

○ 큰샘A지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	-	-	20,067.4	2,607.6	-	-	-	-	-	-
1	반죽동	315-1	대	57.1	57.1	최속자	반죽동 315	-	-	-	-
2	반죽동	338-1	대	8.6	8.6	오연복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553	-	-	-	-
3	반죽동	339-1	대	60.5	60.5	서갑인	339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길 19	근저당권	-
4	반죽동	342-1	대	85.0	85.0	박서례	공주시 봉황산2길 8(반죽동)	-	-	-	-
5	반죽동	343-1	도	351.3	231.0	국(기획재정부)	-	-	-	-	-
6	반죽동	345-5	대	50.8	50.8	박영임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223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김봉진	공주시 변영1로 179, 명맥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301동 808호(대평아파트)	근저당권, 전세권	-
7	봉황동	149-10	대	38.7	38.7	정근주	149-5	-	-	-	-
8	봉황동	149-11	대	7.0	7.0	권순호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골2길 17-4(옥룡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공주시지부)	근저당권	-
9	봉황동	149-9	대	59.0	37.0	김영윤 외 2인	중학동 167-3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공주시지부)	근저당권	-
10	봉황동	150-5	대	0.3	0.3	한동수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64-1 (반죽동)	-	-	-	-
11	봉황동	150-6	대	3.4	3.4	한동수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64-1 (반죽동)	-	-	-	-
12	봉황동	150-7	대	0.1	0.1	강광남	봉황동 150-2	-	-	-	-
13	봉황동	150-8	도	7.6	7.6	강광남	봉황동 150-2	-	-	-	-
14	봉황동	150-9	도	1.7	1.7	강광남	봉황동 150-2	-	-	-	-
15	봉황동	151-1	대	59.8	59.8	오기선	151	-	-	-	-
16	봉황동	153-2	대	16.8	16.8	조기호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40-10 덕성아파트 1-1301	-	-	-	-
17	봉황동	153-3	대	20.6	20.6	공주시	-	-	-	-	-
18	봉황동	155-3	대	3.2	3.2	변은주	의당면 청룡리 641-3 청룡신한임대아파트 204-803	-	-	-	-
19	봉황동	156-3	대	0.6	0.6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수마을교회	공주시 봉황동 156	곡성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8(서부지점)	근저당권	-
20	봉황동	156-4	대	2.6	2.6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수마을교회	공주시 봉황동 156	곡성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8(서부지점)	근저당권	-
21	봉황동	156-5	대	15.9	15.9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수마을교회	공주시 봉황동 156	곡성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8(서부지점)	근저당권	-
22	봉황동	158-18	전	377.6	377.6	박인숙 외 1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470-9 유정아파트 1-107	-	-	-	-
23	봉황동	162-1	대	27.3	27.3	황영환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3길 6-1(봉황동)	-	-	-	-
24	봉황동	163-1	대	14.0	14.0	이점례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3길 6(봉황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공주시지점)	근저당권	-
25	봉황동	165-1	대	59.8	59.8	윤옥선 외 1인	165	-	-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	봉황동	166-1	대	52.0	52.0	김기중	166	-	-	-	
27	봉황동	171-6	대	5.3	5.3	이민규	171-1	-	-	-	
28	봉황동	171-7	대	3.2	3.2	박명섭	공주시 봉정동 503	-	-	-	
29	봉황동	171-8	대	0.5	0.5	김영희	공주시 봉황동 171-3	공주축산업 협동조합	공주시 신관동 601-8	근저당권	
30	봉황동	171-5	대	14.1	14.1	이민규	171-1	-	-	-	
31	봉황동	175-4	대	20.9	20.9	김용안	중학동 83-2	-	-	-	
32	봉황동	175-5	대	26.1	26.1	이기혁	서울 성동구 군자동 901-15	-	-	-	
33	봉황동	175-3	대	22.7	22.7	김용안	중학동 83-2	-	-	-	
34	봉황동	176-1	대	37.9	37.9	박종철	장기면 평기리 170	-	-	-	
35	봉황동	178-1	대	5.3	5.3	공주시	-	-	-	-	
36	봉황동	181-1	대	48.1	48.1	이규성	공주시 봉황동 181	공주원에농 업협동조합	공주시 응진로 197(산성동)	근저당권	
37	봉황동	182-1	대	100.2	100.2	공주시	-	-	-	-	
38	봉황동	182	대	3.6	3.6	공주시	-	-	-	-	
39	봉황동	183-1	대	45.2	45.2	유두열	183	-	-	-	
40	봉황동	184-1	대	14.9	14.9	박정숙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73-79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41	봉황동	185-4	도	2.1	2.1	편현범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85	-	-	-	
42	봉황동	185-5	도	0.1	0.1	편현범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85	-	-	-	
43	봉황동	185-6	도	2.4	2.4	윤동신	봉황동 185-1	-	-	-	
44	봉황동	188-2	대	2.3	2.3	김형상	공주군 우성면 대성리 산10	-	-	-	
45	봉황동	190-1	대	4.7	4.7	홍평섭	190	-	-	-	
46	봉황동	195-3	대	5.6	5.6	공주시	-	-	-	-	
47	봉황동	195-4	대	0.1	0.1	공주시	-	-	-	-	
48	봉황동	216-3	대	51.7	51.7	김수자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1길 42-1(봉황동)	-	-	-	
49	봉황동	217-4	대	67.5	67.5	손무현	217-1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산성동 187-19,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50	봉황동	217-5	대	11.3	11.3	강옥규	217-3	-	-	-	
51	봉황동	218-1	대	12.4	12.4	이모성	218	주식회사국민은행 합동세마을금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공주지점), 공주시 신안동 45-66	-	
52	봉황동	219-3	대	36.0	36.0	이규성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2길 10(봉황동)	-	-	-	
53	봉황동	219-4	대	43.0	43.0	김영천	공주시 봉황동 282-21	-	-	-	
54	봉황동	221-2	대	28.4	28.4	이미영 외 1인	옥룡동 11-12 중앙빌라 1-302	합동세마 을금고	공주시 신관동 587-20	-	
55	봉황동	378-1	도	18,068.6	751.0	국(국토교통부)	-	-	-	-	
56	봉황동	378-3 1	대	1.9	2.0	국(재무부)	-	-	-	-	

○ 큰샘B지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	-	-	18,893.5	1,010.6	-	-	-	-	-	-
1	봉황동	196-1	대	14.5	14.5	최성수	중학동 205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2	봉황동	200-8	도	1.8	1.8	공주공립중학교 교우원회	중학동 137	-	-	-	
3	봉황동	200-9	대	56.2	56.2	황규정	200-5	-	-	-	
4	봉황동	200-10	대	0.6	0.6	이영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23동 1802호(잠실동, 트라지움)	-	-	-	
5	봉황동	200-11	대	5.4	5.4	이영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23동 1802호(잠실동, 트라지움)	-	-	-	
6	봉황동	201-5	대	8.1	8.1	조현철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길 7, 202호(금학동, 중앙빌라)	백제세마을 금고	공주시 산성동 180-17	근저당권	
7	봉황동	201-6	대	11.7	11.7	김순도	201-2	-	-	-	
8	봉황동	201-7	대	30.4	30.4	김동우	201-3	-	-	-	
9	봉황동	201-8	대	65.6	65.6	최영숙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2-9(봉황동)	케이지케이 칼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운산읍 당월로 322	근저당권	
10	봉황동	203-12	대	18.7	18.7	공주시	-	-	-	-	
11	봉황동	203-7	대	26.3	26.3	공주시	-	-	-	-	
12	봉황동	203-8	대	16.9	16.9	김순자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2-8(봉황동)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길 19	근저당권	
13	봉황동	203-13	대	1.9	1.9	김순자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2-8(봉황동)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길 19	근저당권	
14	봉황동	204-2	대	14.5	14.5	이용인	신평면 봉갑리 322	-	-	-	
15	봉황동	206-13	대	63.8	63.8	공주시	-	-	-	-	
16	봉황동	206-14	대	2.1	2.1	함오형	206-5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17	봉황동	207-3	대	30.7	30.7	유기수	봉황동 207-1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18	봉황동	208-1	대	1.5	1.5	박숙자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2-7(봉황동)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19	봉황동	209-6	대	80.2	80.2	공계산	공주군 탄천면 화정리 130	-	-	-	
20	봉황동	209-7	대	12.5	12.5	윤여진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1길 3(봉황동)	-	-	-	
21	봉황동	211-3	대	46.7	46.7	양한세	오곡동 667	-	-	-	
22	봉황동	211-4	대	3.3	3.3	서현수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1길 5, 디동 5001호(교동, 교동아파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기차)(공주시차부)	근저당권	
23	봉황동	216-4	대	3.4	3.4	공주시	-	-	-	-	
24	봉황동	378-1	도	18,068.6	392.0	국(국토교통부)	-	-	-	-	
25	봉황동	202-3	차	101.3	101.3	공주시	-	-	-	-	
26	봉황동	208	대	206.8	0.5	박숙자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2-7(봉황동)	-	-	-	

○ 장대지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	-	-	20,533	413.4	-	-	-	-	-	
1	반죽동	160-3	대	43.3	43.3	이근범 외 2인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242-2 청실아파트 103-501	-	-	-	
2	반죽동	161-3	대	12.6	12.6	공주시	-	-	-	-	
3	반죽동	162-4	대	1.9	1.9	김상녕	웅진동 403	-	-	-	
4	반죽동	162-5	대	14.8	14.8	강인숙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38-1(중동)	-	-	-	
5	반죽동	180-1	대	29.9	29.9	이학승	180	논산계룡 농업협동 조합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36(두마지점)	근저당권	
6	반죽동	181-4	대	18.9	18.9	한규남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1길 30(요촌동)	-	-	-	
7	반죽동	181-5	대	3.0	3.0	이학승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6-5(반죽동)	논산계룡 농업협동 조합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36(두마지점)	근저당권	
8	반죽동	182-4	대	60.6	60.6	양부자	산성동 193	-	-	-	
9	반죽동	186-2	대	30.9	30.9	김용득	공주시 반죽동 186	-	-	-	
10	반죽동	186-3	전	50.8	50.8	김용득	공주시 반죽동 186	-	-	-	
11	반죽동	187-3	대	12.1	12.1	유석근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6(반죽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공주시지부)	근저당권	
12	반죽동	187-4	대	2.6	2.6	유석근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6(반죽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공주시지부)	근저당권	
13	반죽동	350	도	20,251.6	132.0	국(국토교통부)	-	-	-	-	

# 도시공원(사적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사적공원 : 송산리고분군)의 세부조성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문화재과 ☎041-840-2219)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09. 01.

## 공 주 시 장

1. 사적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고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3. 사적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사적공원	도시공원	금성동 산5-1일원	440,878	-	440,878	' 85.4.3	조성계획변경 (휴게음식점:+33m <sup>2</sup> , 주차장:-33m <sup>2</sup> )

## 4. 조성계획 총괄조서

### 가. 공원시설구역 계획

지 구 별	기 정		변 경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40,878	100.0	440,878	100.0	342,877
자연보존지구	325,933	73.9	325,933	73.9	
공원시설구역	114,945	26.1	114,945	26.1	
왕릉지구(집단시설)	89,200	20.2	89,200	20.2	
단독시설	25,745	5.9	25,745	5.9	

참고 : - 문화재 보호구역(208,831㎡) 사적 13호  
 - 공원구역 내 (195,358㎡), 공원구역 외 (13,473㎡)

###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 공주시 사적공원공원

○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후		
총 계		440,878.0	-	440,878.0	100.00	
교통 시설	도로, 광장	14,687.0	-	14,687.0	3.33	
조경 시설	휴게공원, 연못	11,110.0	-	11,110.0	2.52	
휴양 시설	전망대, 화장실, 휴게공간	881.0	-	881.0	0.20	
운동 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8,300.0	-	8,300.0	1.88	
교양 시설	역사문화관, 고옥, 천주교순교성지, 모형관및임기모형관	18,445.0	-	18,445.0	4.19	
편익 시설	공예품작업장, 음식점, 주차장, 화장실, 휴게음식점	9,239.0	-	9,239.0	2.10	(휴게음식점: +33㎡ 주차장: -33㎡)
기타	녹지	378,206.0	-	378,206.0	85.78	

○ 세부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내용	시설면적(m <sup>2</sup>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우	기정	변경	변경우	기정	변경	변경우	
	총	계	440,878.0	-	440,878.0	4,110.0	-	4,110.0	5,460.7		5,460.7	100.00%
교통시 설		소	14,687.0	-	14,687.0	-	-	-	-		-	3.33%
		도	7,465.0	-	7,465.0	-	-	-	-		-	
		광	7,222.0	-	7,222.0	-	-	-	-		-	
	1-1	광	6,512.0	-	6,512.0	-	-	-	-		-	
	1-2	부진입광장	145.0	-	145.0	-	-	-	-		-	
	1-3	주진입광장	565.0	-	565.0	-	-	-	-		-	
조경시 설		소	11,110.0	-	11,110.0	512.0	-	512.0	512.0		512.0	2.52%
	2-1	휴게공원	10,598.0	-	10,598.0	-	-	-	-		-	
	2-2	연못	256.0	-	256.0	256.0	-	256.0	256.0		256.0	
	2-3	연못	256.0	-	256.0	256.0	-	256.0	256.0		256.0	
유양시 설		소	881.0	-	881.0	168.0	-	168.0	168.0		168.0	0.20%
	3-1	전망대	150.0	-	150.0	70.0	-	70.0	70.0		70.0	
	3-2	화장실	277.0	-	277.0	48.0	-	48.0	48.0		48.0	
	3-3	휴게공간	116.0	-	116.0	25.0	-	25.0	25.0		25.0	
	3-4	휴게공간	66.0	-	66.0	-	-	-	-		-	
	3-5	휴게공간	272.0	-	272.0	25.0	-	25.0	25.0		25.0	
운동시 설		소	8,300.0	-	8,300.0	-	-	-	-		-	1.88%
	4	데니스장	6,300.0	-	6,300.0	-	-	-	-		-	
	5	배드민턴장	2,000.0	-	2,000.0	-	-	-	-		-	
교양시 설		소	18,445.0	-	18,445.0	2,982.0	-	2,982.0	4,332.7		4,332.7	4.19%
	6	웅진백제역사 문화관	4,990.0	-	4,990.0	144.6	-	144.6	1,437.4		1,437.4	
	7	고교육	425.0	-	425.0	100.0	-	100.0	100.0		100.0	
교양 시설	8	전주교순교성지	10,690.0	-	10,690.0	1,361.4	-	1,361.4	1,419.3		1,419.3	
	8-1	순교자참배관	1,751.0	-	1,751.0	17.0	-	17.0	74.9		74.9	
	8-2	교육관	2,316.0	-	2,316.0	704.1	-	704.1	704.1		704.1	
	8-3	황새바위광장	4,330.0	-	4,330.0	122.9	-	122.9	122.9		122.9	
	8-4	순교자 의벽	260.0	-	260.0	-	-	-	-		-	
	8-5	관리자숙소	1,020.0	-	1,020.0	397.4	-	397.4	397.4		397.4	
	8-6	카톨릭문화영성 체험관	320.0	-	320.0	120.0	-	120.0	120.0		120.0	
	8-7	피에타광장	308.0	-	308.0	-	-	-	-		-	
	8-8	성모광장	385.0	-	385.0	-	-	-	-		-	
	9	모형관	2,350.0	-	2,350.0	1,376.0	-	1,376.0	1,376.0		1,376.0	
9-1	모형관	1,950.0	-	1,950.0	1,213.0	-	1,213.0	1,213.0		1,213.0		
9-2	임시모형관	400.0	-	400.0	163.0	-	163.0	163.0		163.0		
편의 시설		소	9,239.0	-	9,239.0	448.0	-	448.0	448.0		448.0	2.10%
	11	공예품작업장	405.0	-	405.0	66.0	-	66.0	66.0		66.0	
	12	음식점	2,170.0	-	2,170.0	333.0	-	333.0	333.0		333.0	
	12-1	음식점	1,300.0	-	1,300.0	146.0	-	146.0	146.0		146.0	
	12-2	음식점	460.0	-	460.0	67.0	-	67.0	67.0		67.0	
	12-3	음식점	410.0	-	410.0	120.0	-	120.0	120.0		120.0	
	13	주차장	6,536.0	감) 33.0	6,503.0	-	-	-	-		-	
	13-1	주차장	4,186.0	감) 33.0	4,153.0	-	-	-	-		-	
	13-2	주차장	820.0	-	820.0	-	-	-	-		-	
	13-3	주차장	640.0	-	640.0	-	-	-	-		-	
	13-4	주차장	370.0	-	370.0	-	-	-	-		-	
	13-5	주차장	220.0	-	220.0	-	-	-	-		-	
	13-6	주차장	300.0	-	300.0	-	-	-	-		-	
	14	화장실	128.0	-	128.0	49.0	-	49.0	49.0		49.0	
	14-1	화장실	128.0	-	128.0	49.0	-	49.0	49.0		49.0	
15	휴게음식점	-	증) 33.0	33.0	-	-	-	-		-	신설	
15-1	휴게음식점	-	증) 33.0	33.0	-	-	-	-		-	신설	
기타		소	378,206.0	-	378,206.0	-	-	-	-		-	85.78%
	16	녹지	378,206.0	-	378,206.0	-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7)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웅진동 65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7) 부지 내 「주택건설사업 (유네스코빌리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일

##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652-3번지 외 2필지

나.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칭	사업내용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1-7)사업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 아스콘 51㎡, 보도 64㎡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4, 602호(반석동)
- 성 명 : (주)루시드 대표 구장서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7년 8월 31일

마. 사용 또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3필지		1,193	212						
1	웅진동	652-3	답	670	5	최병옥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215				
2	웅진동	653-7	답	517	201	안창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60, 8동 1002호(둔산동, 한마루아파트)	대전동 부새마 을금고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48(가오동)	근저당권	
3	웅진동	653-12	답	6	6	전종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 느티마을 404-40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8. 3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174 (반죽동) 외 3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8.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52-1	충청남도 공주시 무림로 174 (반죽동)	2016.08.30	신축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2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106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길 3-1 (중학동)	2016.08.30	신축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괴동 151	충청남도 공주시 벗간중앙길 15-1 (괴동)	2016.08.30	신축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4	충청남도 공주시 용덕동 452-3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루길 2045 (용덕동, 괴사동)	2016.08.30	누락	20090825	기존 도로명칭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동 266, 253-1, 253-2, 253-5, 253-10	충청남도 공주시 무림로 77 (용진동, 중공로동)	2016.08.30	신축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6	충청남도 공주시 옥현동 324	충청남도 공주시 옥현4길 4 (옥현동, 중공로동)	2016.08.30	누락	20100112	지역특성과 일관번호 방식 복합 반영
7	충청남도 공주시 태평동 신1-1	충청남도 공주시 모새길 67-42 (태평동)	2016.08.30	신축	20100112	해당 지여미를 명칭을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44-7	충청남도 공주시 큰못길 14 (신기동)	2016.08.30	신축	20100112	해당 지여미를 명칭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상해동 277-79	충청남도 공주시 기나무정길 77-13 (상해동)	2016.08.30	신축	20100112	기나무가 정지차림 서 있는 이름이라 하여 생긴 지여미를 명칭을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신민동 247-6	충청남도 공주시 특수길 20-6 (신민동)	2016.08.30	신축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11	충청남도 공주시 석정리동 78	충청남도 공주시 신민동 1004-37 (석정리동)	2016.08.30	신축	20090825	해당 지여미를 명칭을 활용
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벽곡리 149-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31-46	2016.08.30	신축	20100112	일관번호망상과 도로특성 반영
1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산리 165-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재골길 5-12	2016.08.30	신축	20100112	옛날부터 마을에 신재동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신재골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산리 16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재골길 5-14	2016.08.30	신축	20100112	옛날부터 마을에 신재동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신재골길로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산리 18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정1길 8	2016.08.30	신축	20100112	옛날부터 마을에 큰 정이 있었다 하여 한정1길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8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새마을길 12-40	2016.08.30	신축	20100112	새마을로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길로 부여 후 다른 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불기
1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288-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34-30	2016.08.30	신축	20100112	만천리를 관용하는 주소도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민원별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이안면 옥동리 158	충청남도 공주시 이안면 옥정길 13	2016.08.30	신축	20100112	해당 지여미를 명칭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4-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남마을길 136	2016.08.30	신축	20100112	해당 지여미를 명칭을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603-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진실길 34	2016.08.30	신축	20100112	과거 나오는 마을이름, 부락명은 현재 행정명칭이 사용되므로 지여미를 행정명칭이 사용되지 않는 마을이라 하여
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진리 400-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영사로 96	2016.08.30	신축	20100112	경진에서 개룡산 신영사로 가는 경로 신영사로라 부여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팔곡리 345-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옥정길 23	2016.08.30	신축	20100202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있어 옥정이라 불렀다는 지여미를 명칭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원리 7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370	2016.08.30	신축	20100112	인근에 영규대사당이 있어 영규대사로로 부여
2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67-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주성42길 65	2016.08.30	신축	20100112	해당 지여미를 명칭을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미암리 산46-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미치고개로 268	2016.08.30	누락	20100112	해당 지여미를 명칭을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황정리 205-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옥암로 505-29	2016.08.30	신축	20100112	신당동 관측을 가정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용하는 주소도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으로 부여
2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황정리 298-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황정리 153-4	2016.08.30	신축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인근군 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반영
28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홍리 516-18, 516-5, 516-2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진의로 1130-35	2016.08.30	신축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인근군 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반영
2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시현리 86-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미재1길 107-5	2016.08.30	신축	20100112	마을이름이 미재로 불려져 있어 미재길로 부여 후, 일관번호 방식 복합 반영
3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성리 21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동태성길 221	2016.08.30	신축	20100112	인근에 태성리를 관용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일관성있길로 부여
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통대리 413-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통대리 21	2016.08.30	신축	20100112	통대리의 주 이름을 관용하는 길이며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통대리3길로 부여
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북리 68-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북길 159	2016.08.30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활용
3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통진리 1016-1, 101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통진리 2465	2016.08.30	신축	20090825	기존 도로명칭 활용
3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12-3, 412-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수목동길 3	2016.08.30	신축	20110630	기존 도로명칭 활용
35	충청남도 공주시 신북면 동흥리 404-5	충청남도 공주시 신북면 동흥리 161	2016.08.30	신축	20100202	해당 지여미를 명칭과 지역특성 복합 반영

※ 부여 사유에 관하여는 고시일자가 그 날이 개시된 이후에 부여된 도로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부여된 도로명칭을 부여된 이후에 부여된 도로명칭으로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8. 3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미나리2길 10-5 (금성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8.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직장부 주소진환 계획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충청남도 공주시 금정동 197-3	충청남도 공주시 금정동 197-10, 197-11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2길 10-5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2길 10-5	2016.08.11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금정동 197-2	충청남도 공주시 금정동 197-3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2길 10-9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2길 10-9	2016.08.11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09-4, 신 20-1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09-2	충청남도 공주시 우원길1길 9	충청남도 공주시 우원길1길 9	2016.08.17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335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335-6	충청남도 공주시 법사물길 56	충청남도 공주시 법사물길 56	2016.08.19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477-1, 476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477-1, 476-2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42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42	2016.08.23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7, 17-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7	충청남도 공주시 복수골길 39	충청남도 공주시 복수골길 39	2016.08.23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정리 33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정리 신 47-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감사로 543-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감사로 543-21	2016.08.23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정리 신 47-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정리 신 47-1, 34-4, 34-4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감사로 543-1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감사로 543-19	2016.08.23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8. 3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산제골길 5-14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8.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66-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제골길 5-14	2016.08.21	건물번호 폐지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324	충청남도 공주시 종골4길 4-1	2016.08.30	건물주소	